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이사회 및 이사장 귀중

2018년 05월 24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법인회계 및 동 법인이 설립한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비회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각각의 재무상태표와 합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각각의 운영계산서와 합산운영계산서, 각각의 자금계산서와 합산자금계산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 감사인의 책임은 본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인은 의견거절 근거문단에서 기술된 사항으로 인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 근거

주석 1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의 채권자인 동우건축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2017년 3월에 학교법인의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학교법인은 2017년 10월에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7년 10월 25일에 포괄적 지급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결정 및 2017년 11월 8일에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의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학교법인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오에 따라 2018년 2월 23일에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학교법인은 특별항고를 2018년 3월 28일에 대법원에 제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기업가정에 유의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경영진은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본 감사인은 계속기

업가정의 사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

본 감사인은 의견거절 근거문단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인은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법인회계와 동 법인이 설립한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법인회계와 동 법인이 설립한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2017년 02월 28일자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도 본 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2017년 5월 24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논현동, H-Tower), 14층

공인회계사 손 기 근 (인)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8년 05월 24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